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12. 20 선고 2024가단6048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주식회사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서울 마포구 D 건물 E호 중 별지 도면 표시 1,2,3,4,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가'부분을 인도하고,

나. 2,136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2024. 8. 27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,068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최은주

별지